

## 2025년 스케일업 텁스 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스케일업 텁스 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5년 4월 7일 공스케일업 텁스(일반형) 기업지원 계획 공고 이후,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지원 예산이 1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스케일업 텁스(일반형) 신규과제는 102개에서 152개로 확대되었으며, AI분야의 글로벌 경쟁 및 급격한 시장·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1. 프로그램 소개

#### □ 프로그램 목적 및 개요

- 투자·R&D·글로벌진출 등 기업성장과 관련한 민간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R&D 자금을 출연 및 투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

#### □ 프로그램 규모 및 조건

구분	일반형		글로벌형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스케일업 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유치 (*트랙별 세부지원 조건은 본문 2. 프로그램 세부 지원계획 참조)		
R&D	지원 규모	예산(억원)	286.16
		과제수(개)	152
	지원 내용	지원한도	최대 12억원
		지원기간	36개월 (3년)
		출연비율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일정	신청접수	수시
		선정평가	매월(예산소진 시 까지)

구분		지원내용
지분투자	투자재원	모태펀드 출자
	투자조건	스케일업 팀스 R&D마일스톤 달성을 및 운영사로부터 5억원 이상 후속투자 유치
	투자한도	1배수 이내 매칭, 최대 20억원
	신청·접수·평가	수시(별도 안내)

※ 중소기업은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별첨1-1]를 통해 수시 신청[별첨1-2]

#### 프로그램 지원분야[별첨2]

구분	지원분야
일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기술 기반(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분야 영위)의 딥테크 중소벤처기업, AI분야의 글로벌 경쟁환경 변화의 가속에 대응한 혁신형 AI 기업 ※ 초격차 10대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124개 품목, 품목 내 AI분야 및 적용 기술</li> </ul>
글로벌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으로부터 既 검증 또는 해외시장 진출 준비가 된 글로벌 유망기업 ※ 해외투자 유치 100만불, 누적 해외매출 50억원, 해외법인 설립</li> </ul>

#### 프로그램 지원절차



## 2. 프로그램 세부 지원계획

### (1) 스케일업 티스(일반형)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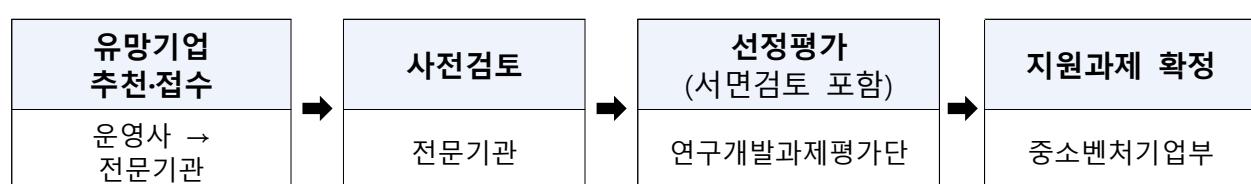
- (지원내용) 기술기반 유망 중소벤처를 민간 VC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을 활용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스케일업 티스 운영사로부터 10억 원 이상 투자 받고 추천된 중소벤처기업
  - \* 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별첨3](#))
- (지원규모) 신규과제 152개 내외
  - \* 전체 지원규모 중 50% 내외를 AI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굴·지원
- (지원예산) 정부출연 총 286.16억 원 및 지분투자 약 300억 원

< 스케일업 티스(일반형) 지원내용 >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R&D	최대 3년, 12억 원	75% 이내	자유응모
지분투자	제한없음, 20억 원	(매칭펀드) 운영사 선투자금 1배수 이내 매칭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 지분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

#### □ 선정절차(R&D)



-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사업성 및 역량 중심의 대면평가 진행

< 스케일업 팁스(R&D, 일반형) 선정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지표
기술성(30)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정책분야와의 적합성
사업성(50)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성장가능성, R&D의 경제적 파급효과, R&D의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역량(20)	운영사·기업 추진의지, 기업 전문성

- (가·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신청기업)이 가·감점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고

- TIPS와 연계 및 글로벌 진출 기업 등 가점 추가 적용(최대 5점)

< 스케일업 팁스(R&D)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	
TIPS연계 (최대 5점)	후속 투자 유치, 주요 성과 달성, 높은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올해의 TIPS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5점	한국엔젤 투자협회	
	접수마감일 최근 3년 이내 스타트업 팁스(창업성장기술 개발-TIPS과제) 수행 후 "우수", "보통"판정 받은 기업	3점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Post-TIPS)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협약체결 후 제외대상으로 요건 제외 된 경우 제외)			
글로벌 진출 (2점)	최근 3년 이내 "K-GLOBAL STAR" 기업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2점	한국벤처 투자	
Jump-up (2점)	접수마감일 기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기업	2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자는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가점' 순으로 결정

## □ 선정절차(지분투자)

구분	내용	비고
신청·접수	· 운영사 → 전문기관	KVIC 사전협의 必
(1차) 적격확인	· (서류심사) 투자 적격성, 신청자격 등 확인	
(2차) 본심사	· (현장실사) 투자대상기업 실사 및 기관투자자 미팅	
(3차) 투자심의회	· 투자기업 최종 선정	
선정 통지	· 선정 통지 및 투자계약 체결 협의 진행	

- 투자규모 및 대상

항목	세부내용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스케일업 팀스 R&amp;D 수행 중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운영사로부터 5억원 이상 후속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팀스 R&amp;D 최소 1년 이상 수행 및 마일스톤 목표 달성</li> </ul> </li> <li>■ (기업요건) 다음 ①~⑤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p style="text-align: center;">&lt; 지분투자 기업요건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TIPS프로그램 선정 기업</li> <li>②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부R&amp;D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li> <li>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li> <li>④ K-GLOBAL STAR 최종 선정 기업</li> <li>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li> </ul> </li> </ul>
투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 투자금액의 1배수 이내 매칭(20억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의 경우 최대 2배수, 30억 한도</li> <li>** 매칭펀드(지분투자)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의무</li> </ul> </li> </ul>
투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①신주(보통주, 우선주), CB, BW 투자, ②공동 매각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 투자와 KVIC의 투자심사간 기업가치 등이 동일한 경우에만 투자심사 가능</li> </ul> </li> </ul>
투자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와 동일 라운드에 동시 투자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 투자 후 일정기간 이내 R&amp;D매칭펀드가 동일조건으로 투자하는 경우 포함</li> </ul> </li> </ul>

※ 신청·지원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별첨4] 참고

## ○ 인센티브

항목	세부내용						
<b>콜옵션 부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대상 : 투자기업(창업자 및 임직원), 기관투자자에게 R&amp;D 매칭 펀드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매입권한(콜옵션) 부여</li> <li>■ 부여조건 : 투자 이후 5년 이내에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달성시             &lt; 성과별 달성 기준* &gt;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background-color: #f2e0d2;">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율)</th> <th style="background-color: #f2e0d2;">사회적 성과 (종업원 수 증가율**)</th> <th style="background-color: #f2e0d2;">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증가율)</th> </tr> <tr> <td>50%</td> <td>40%</td> <td>200%</td> </tr> </table> </li> </ul> <p>* 지분투자 직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산출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한도 : 투자기업 임직원 등에 최대 40% 및 기관투자자에 최대 20% 부여             * 기관투자자에게 부여 가능한 콜옵션은 신청서 제출시 기관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기업에게 부여 가능</li> <li>■ 부여시기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시점부터 부여 가능</li> <li>■ 세부사항 : 최종 선정 이후 R&amp;D매칭펀드 표준인센티브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li> </ul>	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성과 (종업원 수 증가율**)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증가율)	50%	40%	200%
경제적 성과 (매출액 증가율)	사회적 성과 (종업원 수 증가율**)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증가율)					
50%	40%	200%					
<b>콜옵션 행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기간 : 투자금 납입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상장(단, 코넥스 상장은 제외) 또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li> <li>■ 행사가격 : 펀드 투자원금에 일정수준의 복리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이자율은 선정통지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p를 가산하여 책정         </li> <li>■ 행사조건 : 콜옵션 부여 가능한 경제적·사회적·기술적 성과 유지</li> </ul>						

## (2) 스케일업 티스(글로벌형)

### □ 사업개요

- (지원내용) 혁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벤처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R&D 지원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및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세부조건 택1

< 스케일업 티스(글로벌형) 지원대상 >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공통요건	스케일업 티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이상 先투자 유치
세부조건 (택1)	해외 VC로부터 1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달러 이상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별첨3~6) 참조

\*\* 스케일업 티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둘 중 한 개의 트랙만 신청 가능(동시수행 불가)

- (지원규모) 신규과제 24개

\* 정책 연계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을 수행한 기업 우선 선정  
\*\* 주요 지원사업 : [창업사업화] 티스(딥테크 티스 포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규제해소] 글로벌혁신특구, [보증]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 (지원예산) 정부출연 총 57.92억 원 및 지분투자 약 300억 원

< 스케일업 티스(글로벌형) 지원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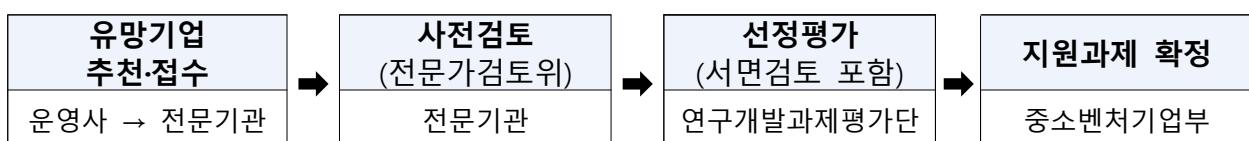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R&D	최대 3년, 1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지분투자	제한없음, 20억원	(매칭펀드) 운영사 선투자금 1배수 이내 매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지분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

### □ 선정절차(R&D)



- (사전검토) 해외투자 및 매출액 등 신청요건, 투자적격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과제 확정
  - \* 해외투자 및 매출액 진위 여부, 해외법인 지분관계 등 자격요건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 개발계획서를 토대로 기술성, 사업성 및 역량 중심의 대면평가 진행
  - < 스케일업 텁스(R&D, 글로벌형) 선정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지표
기술성(30)	창의 도전성,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정책부합성
사업성(20)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R&D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글로벌역량(40)	글로벌 IP 보유 및 적용 방안, 글로벌 인프라, 추진실적 및 준비, 글로벌 협업 역량
사업수행역량(10)	기업역량, 컨소시엄역량

- (가·감점) 스케일업 텁스(일반형)과 동일하게 적용
- (지원과제 확정)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이 동일한 동점자는 ‘글로벌역량,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역량, 가점’ 순으로 결정

## □ 선정절차(지분투자)

구분	내용	비고
신청·접수	· 운영사 → 전문기관	KVIC 사전협의 必
(1차) 적격확인	· (서류심사) 투자 적격성, 신청자격 등 확인	
(2차) 본심사	· (현장실사) 투자대상기업 실사 및 기관투자자 미팅	
(3차) 투자심의회	· 투자기업 최종 선정	
선정 통지	· 선정 통지 및 투자계약 체결 협의 진행	

- (투자규모 및 인센티브) 스케일업 텁스(일반형)과 동일하게 적용
  - ※ 신청·지원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별첨4] 참고

### 3. R&D 신청방법

#### ① 신청 및 접수(신청기업 → 운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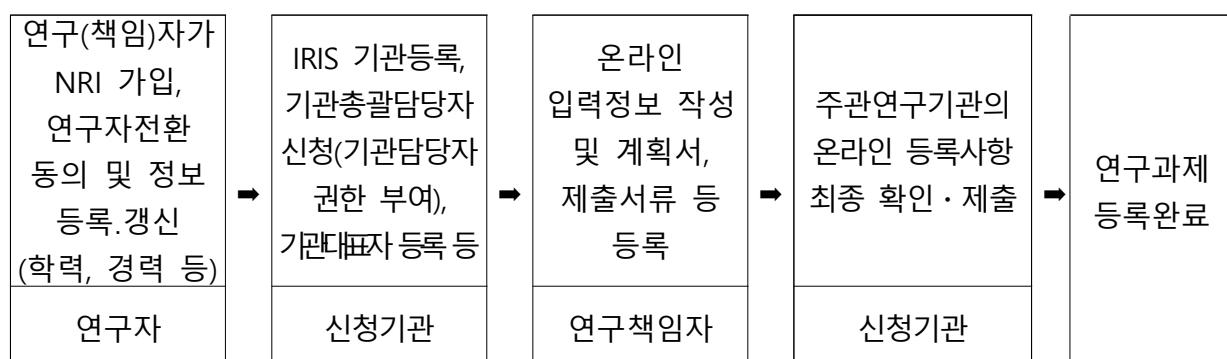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스케일업 텁스 운영사에게 개별 문의하여 신청(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등)
  - \* 스케일업 텁스 운영사 문의처 참고[별첨1-2]
- 신청받은 스케일업 텁스 운영사는 전문기관에게 추천

#### ②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운영사 → 전문기관)

- (투자심사) 스케일업 텁스 운영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유망기업 추천) 스케일업 텁스 운영사는 유망기업을 투자(확약)하여 전문기관에 추천(운영사별 연간 추천 T/O범위 내)
  - \* 유망기업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운영사에 안내

#### ③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기업 → 전문기관)

- (접수방법) 운영사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에 접수
- 접수기간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스케일업 티스' 검색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은 차수 별 접수마감일의 자정(23:59:59)까지이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과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추천서류) 운영사가 전문기관에 기업을 추천 시 제출할 문서

< 스케일업 티스(R&D) 추천서류 >

제출서류	비고
스케일업 티스 총괄 추천 양식	공통 필수
스케일업 티스 기업 추천현황	공통 필수
추천기업 투자현황 요약표	공통 필수
투자심의보고서	공통 필수
투자계약서	공통 필수
투자(예정) 확약서	해당 시
<b>글로벌형 신청 요건 증빙서류 [별첨 참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투자 유치 : 해외VC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li> <li>· 해외매출 보유 : 수출실적증명서 등 최근 3년간 누적 해외매출증빙 등</li> <li>· 해외법인 설립 : 해외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지분현황 등</li> </ul> <p>* 세부조건 중 해당사항을 택하여 제출</p>	글로벌형 필수

○ (접수서류) 신청기업이 IRIS에 접수 시 제출할 문서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스케일업 팁스(R&D) 접수서류 >

제출서류		비고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1) 한글 또는 PPT중 택1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별첨) 글로벌 진출 전략서	글로벌형 필수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글로벌형 필수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 필수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공통 필수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공통 필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공통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공통 필수
스케일업 프로젝트 추천서		공통 필수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 시
가감점 적용 증명서		해당 시

## < R&D 연구개발비 구성 및 산정기준 >

### ☞ 연구개발비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
  -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며,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sup>\*</sup>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 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4. 지분투자 신청방법

### ① 신청 및 접수(신청기업 → 운영사)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신청기업은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에게 개별 문의하여 신청(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 투자심사역 면담 등)
  -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 문의처 참고[별첨1-2]
- 신청받은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는 전문기관에게 추천

### ② 투자심사 및 유망기업 추천(운영사 → 전문기관)

- (투자심사)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는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유망기업 추천)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는 유망기업 투자(화약) 및 R&D 마일스톤 성과를 점검하여 전문기관에 추천
  - \* 유망기업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및 방법 등은 별도 운영사에 안내

### ③ 지분투자 신청서 접수(운영사 → 전문기관)

- (접수방법)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는 지분투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scaleuptips@tipa.or.kr)로 접수
  -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는 신청제출 전 투자기관 사전협의 필요
- (구비서류) 운영사가 전문기관에 기업을 신청 시 제출할 문서

< 스케일업 텁스(지분투자) 접수서류 >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신청서	(Part1) 지분투자 신청서 * [붙임] 1. 지분투자 추천기업 투자현황 요약표	공통 필수
	(Part2) 지분투자 세부계획서	
별첨1. 기관투자자 확인서		공통 필수
별첨2. 투자대상기업확인서		공통 필수
별첨3. 투자확약서		공통 필수
별첨4-1. 주주명부		공통 필수
별첨4-2. 자본금변동내역		공통 필수
별첨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통 필수
별첨6.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공통 필수
별첨7.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공통 필수
별첨8. 특허출원현황		해당시
별첨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통 필수
별첨10. 투자심의위원회 보고서, 투자심의위원회의사록		공통 필수
별첨11. 투자(인수)계약서		공통 필수
별첨12. 투자(예정)확약서		해당시
별첨13. 투자규약		공통 필수
별첨14. 개인(신용)정보수집활용동의서 – 운영사, 신청기업		공통 필수

## 5. R&D 추가 검토사항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프로그램별 등 신청·제외사항은 [별첨3] 참고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위반 과제는 선정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참고 : 3책 5공제도 개요 >

- (개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예외)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별첨4] 참고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 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 시스템사용 : [>>알림고객>>자료실>>IRIS사용메뉴얼>>온라인메뉴얼>>"기술료"검색>>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http://www.iris.go.kr) 참고
- \* 법령확인: [>>알림고객>>자료실>>국가R&D법령.지침>>"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http://www.iris.go.kr) 참고

## 6.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세부 관리지침 등)을 적용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7. 설명회

### □ DCP · 스케일업 팀스 기업 지원 통합설명회

- (일시·장소) '25. 5. 19.(월), 14:00 ~ 16:00 / 온·오프라인
  - 오프라인 : 역삼 텁스타운(S1) B1F 텁스홀 / 온라인 : 유튜브\* 중계
-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 (내용) '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및 스케일업 팀스 통합 기업지원 계획 설명

## 8. 문의처

문의내용	기관명	연락처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R&D평가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22, 0427, 0426
지분투자 신청서 작성, 지분투자 심사 등	(투자기관) 한국벤처투자	02-2156-2223, 2477, 2231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3017-7074, 7075, 7077, 7080, 7081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http://pf.kakao.com/_llfqd)

[별첨1-1]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24개 컨소시엄)

[별첨1-2]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별 문의처

[별첨2]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

[별첨3] R&D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별첨4] 지분투자 선정배제 및 취소기준

[별첨5] 보안대책

[별첨6] 스케일업 팀스(글로벌형) 제출서류

## 별첨1-1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24개 컨소시엄)

### □ 스케일업 팀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운영사

- 스케일업 팀스는 지정된 운영사('25.3월 현재 24개)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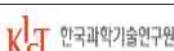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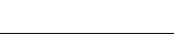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란?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문인력 및 지원역량을 갖춘 VC와 연구개발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운영사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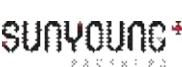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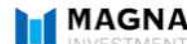
☞ 스케일업 팀스 운영사의 선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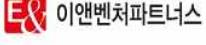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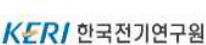
※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이 높은 스케일업 단계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투자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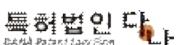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징
1	투자	이노폴리스 파트너스		기술사업화, 제조전문 초기 벤처캐피탈, 기술중심 투자전문가로 구성, 지역기반 투자 성공사례 다수 보유
	R&D	한국 과학기술지주		정부출연연구기관(17개)이 공동 출자한 기술지주회사로 출연연의 우수기술을 사업화
		한국 자동차연구원		자동차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완성차, OEM업체가 공동 설립, 연구개발, 시험인증 제공
2	투자	인라이트 벤처스		소부장 등 지역소재 기업에 집중 투자, 한국소부장투자기관협의회 참여 VC
		인탑스 인베스트먼트		모회사가 코스닥상장사, 삼성전자 모바일 및 가전부분 공급사, 테크펌 기업 육성 경험 다수 보유
	R&D	인비전 아이피컨설팅		인비전특허법인(국내 10위권)에서 분사한 기업으로 16개국 70개 로펌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특허 및 사업화 컨설팅
		대경지역대학 공동기술지주		대구, 경북지역 11개 대학 공동 출자 설립, 지역 우수기술 기반으로 사업화 추진
3	투자	L&S 벤처캐피탈		삼성전자, 현대차 등 산업계 출신 전문심사역이 반도체/소부장/디지털혁신 등 전문 산업특화 펀드 운용
	R&D	에트리홀딩스		에트리 100% 출자 설립, 딥테크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 역량 보유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및 관련 분야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이디리서치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 보유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4	투자	케이그라운드 벤처스		출연연, 대학, 산업체의 혁신 IP/기술 발굴 및 사업화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DSC 인베스트먼트		초기 기업 투자를 전문영역으로 하며 스케일업을 위 한 후속 투자, 체계적인 투자사 경영지원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가능한 전문 벤처캐피탈	
	R&D	기술과가치		정부 R&D 기획 및 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원, Start-up Engineer, Start-up Marketer, Start-up Investor 역량 보유	
5	투자	위벤처스		대기업 CVC 및 창업경험 기반 투자전문성, 산업 계 전반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분야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R&D	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R&D기획 및 전주기 관리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업	
6	R&D	아주IB투자		KOSDAQ 상장, 국내 1세대 대표 벤처캐피탈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 모펀드(PEF) 등 벤처캐피탈 사업과 PE 사업을 동 시에 영위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66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출연 종합연구기관이 며, 2,200명 이상의 전문 연구원 보유	
		고려대학교 의료원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허브, 바이오메 디컬분야 기술사업화 선두주자(최근 3년간 80건)	
7	투자	한국기술 벤처재단		KIST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창업지 원 성공사례 다수 (매출액 100억원 이상 9개사 배출)	
		대덕벤처 파트너스		2014년부터 ICT, 소부장, 바이오 등 80여개사 투자, 지역 기반(대전/충청권) 및 공공기술사업화 투자 전문 VC	
	R&D	롯데벤처스		롯데그룹의 전략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주도형 VC	
8	R&D	유에이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IP분석, 기술거래,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지역기반 기술사업화 컨시어지 플 랫폼 운영 (95% 이상 비수도권 기업 R&D 지원)	
		캡스톤 파트너스		2008년 설립된 뉴칼라 창업자 전문 투자 VC, 국내 최초 12년 최장기 펀드 결성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	
		퓨처플레이		제품기획 및 고객 반응 분석하여 10년 내 미래를 바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지원 하는 VC	
		스파크랩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연합 GAN 회원사, 한국과 미국 내 법인 설립경험이 있는 운영진으로 구성	
		미래과학 기술지주		'14년 4개 과기특성화대학(KAIST, UNIST, GIST, DGIST)이 주축이 되어 설립, 과기특성화 대학의 연 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 회사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9	투자	HB 인베스트먼트	 HB INVESTMENT	1999년에 창업한 1세대 VC로 체계적인 벤처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투자 파트너
		NVC 파트너스	 NVC PARTNERS	기술창업가들이 성공적인 EXIT 경험을 공유하고자 설립한 테크펌 전문투자 VC. 성장단계의 Value-Up 컨설팅에 특장점 보유
	R&D	전략컨설팅 집현	 WITH WISERS	기술혁신 정책 및 기업성장 전략 분야의 솔루션을 만들어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는 국내 대표 기술경영-전략컨설팅 전문회사
10	투자	디티앤 인베스트먼트	 Dt& Investment	D.N.A, 서비스플랫폼, 바이오·헬스케어 등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VC
		(주)내비온	 Navion Partners	실험실 딥테크 컴퍼니 빌딩 및 기술사업화 (Lab-to-Market) 엑셀러레이터, 테크펌의 글로벌 스케일업 및 오픈이노베이션 관련 전주기 컨설팅 서비스 기업
	R&D	(주)디티앤씨	 Dt&C	시험인증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 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내 R&D 인증 서비스를 제공
11	투자	플래티넘 기술투자	 Platinum 풀레티넘기술투자	소부장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초기 투자 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후속 투자하는 VC
		유비퀴스 인베스트먼트	 ubiQuoss investment	2차 전지, 에너지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VC
	R&D	한국기계 연구원	 KIMM 한국기계연구원	1976년 개원한 소부장 중심의 정부출연 연구소로 574명의 전문 연구원 보유, 기술이전 156건 완료(21)
		부산연합 기술지주	 BUH 부산연합기술지주	부산시와 부산지역 16개 대학이 출자하여 만든 기관으로 부울경 지역 초기 제조/하드웨어 및 기술 기반 기업에 투자 및 컨설팅을 지원
		특허법인 지원	 특허법인 지원 OR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호남권, 영남권에 특화된, 창업기획자, 기술거래기관 등 다양한 자격을 보유한 특허법인
12	투자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 TimeWorks Invest	창업 초기, 소부장 투자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우수 테크펌 육성의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
		iM투자 파트너스	 iM 투자파트너스	DGB금융그룹 계열 벤처캐피탈. 테크펌으로 체계적인 벤처 활동 시스템, 산학연 및 금융그룹 시너지 네트워크를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 지원
	R&D	(주)유원솔루션	 U1 유원	테크펌 전문 변리사, 기술거래사, 가치평가사로 구성된 사업화팀을 통해 맞춤형 R&D 기획, 기술 사업화 및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13	투자	BSK 인베스트먼트	 BSK INVESTMENT	초기부터 Pre-IPO까지 스케일업에 특화된 첨단 제조·하드웨어 섹터 전문 투자기업
		동문파트너즈	 동문파트너즈 EAST GATE PARTNERS, LLC	2010년 설립한 콘텐츠, 딥테크, 플랫폼, 소부장등 기술 기반 창업 초기 전문 투자기업
13	R&D	한국전자기술 연구원	 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전자·IT분야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견인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 INNOVATION	특허청 산하 기술사업화 전문 공공 기관으로 기술거래 IP평가,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선영파트너스	 SUNYOUNG+ 선영파트너스	R&D, 기술사업화, 글로벌 진출, 성장 전략 등 R&D 전주기 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문기업
14	투자	SK증권	 행복 파트너 SK 증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Deep-tech 전문 국내외 전주기 투자 역량 보유
		티인베스트먼트	 TINVESTMENT	평균 투자경력 15년 이상의 투자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에 핵심 투자하는 테크펌 전문 VC
14	R&D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YONSEI TECHNOLOGY HOLDINGS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STARTUP TIPS 운영사로 연구 역량 강화와 우수 기술의 실용화 지원
		나이스평가정보	 NICE 평가정보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술평가, 기술거래, 신성장 동력 기술사업화 등 기업성장 및 기술특례상장 지원
		에이치앤피 파트너스	 (주) 에이치앤피파트너스 Honesty & Passion Partners Co., Ltd.	연구개발전문회사로 R&D 기획부문과 특허부문 계열사로 구성, IP기반 사업화 및 투자전략 수립 역량 보유
15	투자	데일리 파트너스	 DAYLI Partners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벤처캐피탈로, 누적 운용자산 (AUM) 규모 4,029억원, 투자 포트폴리오 기업 93개사 보유. VC, AC, PE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Seed ~ Pre IPO 및 상장사 메자닌 투자 진행 중
	R&D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융재단	 KMEDI hub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융재단	혁신신약 최적화 지원과 차세대 플랫폼기술 구축 R&D연구기관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R&D 연구기관
16	투자	세마 인베스트먼트	 sema INV.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출자한 창투사로 우수 공공기술 기반 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
		마그나 인베스트먼트	 MAGNA INVESTMENT	초기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특화된 VC, Private Equity 운용사
		케이투인베스트 먼트파트너스	 K2Investment Partners LLC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LLC)	글로벌 기술 경쟁력 통해 해외에서 수익 창출 가능한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테크펌 전문 투자기업
	R&D	(주)에스와이피	 SYP Special Your Partner 주식회사	변리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 초기투자까지 기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는 과학기술기반 사업화 전문회사이자 액셀러레이터
		글로벌디지털 혁신네트워크	 GDIN GLOBAL DIGITAL INNOVATION NETWORK	국내 디지털 분야 기술기업 해외진출 전문기관, 전문 컨설팅,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테크매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운영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17	투자	스케일업 파트너스	 <small>Investment Partner Consulting Firm</small>	팁스 및 스케일업팁스 동시 운영사로서 딥테크 기반 잠재 유니콘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주기 스케일업 프로그램 보유 컴퓨터빌더형 VC
		엠씨 파트너스		신성장 산업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SI 투자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17	R&D	애니파이브		국내 1위의 지식재산권 솔루션과 핵심기술 보유 통합서비스 플랫폼(씽캣)과 Cloud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 및 통합운영서비스 운영
		이크레더블		기술특례상장 평가 및 자문 기술가치 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술평가기관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과 교원, 학생 창업에 특화된 전문 투자, 육성 기관
		KIC Washington		과학기술·ICT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과 연구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현지 허브 기능을 수행
		제타플랜 인베스트		2006년 설립 AC로 기술사업화 산업부장관상 경력보유, 중국, 베트남, 인니 지사 및 해외 파트너 보유 IP 사업화 기관
18	투자	원익 투자파트너스		딥테크 기반 소부장 기업과 ICT 서비스에 집중 투자하는 업력 26년 전통의 VC
		이앤 벤처파트너스		산업계 및 투자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로 구성된, 지역소재 기술기반 혁신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
	R&D	윕스		전세계 특허데이터와 공공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초기 창업투자 등 지식재산(IP) 토탈 서비스 제공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국내 1호 대학기술지주회사로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투자 및 보육, R&D 자금연계,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전기 전문 연구기관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19	투자	유진투자증권		중소·벤처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금융계열사 활용 전주기 금융 솔루션 지원 역량, 제조분야 그룹사 사업 연계 지원 및 오픈이노베이션 역량 보유
		안다아시아 벤처스		4차산업 전문투자사로서 상장사/중견기업과 함께하는 멘토링협의체 운영 등 차별화된밸류업 강점 보유
	R&D	특허법인 다나		국내 상위 특허법인으로서 정부지정 IP기반 R&D기획,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기술가치평가, 수출바우처,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리 등 전문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전국 특화분야별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체계 운영, 중소기업 대상 시험장비 및 계측기기 개방 운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 산업분야 시험인증, R&D, 기술서비스 제공하는 국내 대표 기술서비스 기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리기관
		드림 씨아이에스		Global CRO 그룹 Tigermed 계열사로 52개국 Global Network 보유, 1,700건 이상의 IND/NDA 인허가 컨설팅 경험 및 2,200건 이상의 임상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보유한 임상시험수탁기관
		키프론바이오		국내 최대 비임상 CRO 바이오톡스텍 그룹 계열사, 초기신약 개발 및 비임상 평가 전문 기업,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개발능력 자체보유, 연 500건 이상의 시험 수행역량
20	투자	삼성벤처투자		삼성의 경영 노하우와 신뢰성을 바탕으로 선진 투자기법과 제도를 도입해 국내 벤처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벤처투자사
	R&D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창업기업이 필요한 R&D전략수립, BM기획, IPO컨설팅 등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갖춘 액셀러레이터 기관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		교원창업기업 자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자회사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및 투자컨설팅·투자연계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기관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분석과학 연구장비의 개발, 성능평가 개선 및 국산장비의 활용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기관
21	투자	에코프로 파트너스		'25년 1월말 기준 약 2,200억원의 AUM 운용 중, 주요 투자분야는 에너지/환경으로 다수의 지방전문펀드 운용 및 지역활성화 노하우를 보유
		현대차증권		현대차그룹 소속 신기술사업금융업 라이센스를 보유한 투자전문 회사로 현대차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 펀드인 'HMG 제로원 조합'을 운용
	R&D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등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과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한국콤팘스		세계 최대의 B2B마케팅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수출입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Global Company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선 발굴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네모아이씨지		한국을 본사로 8개국 12개 사업 부문에서 180여명의 상근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25년 경력의 종합 컨설팅그룹으로 R&D 기획, 기술자문 및 사업화컨설팅 제공

No.	운영사 컨소시엄			특 징
22	투자	엘에스케이 인베스트먼트		국내 최초 바이오 산업분야에 특화된 독립계 VC로서, 신약개발,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산업내 핵심 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엔에이치 벤처투자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된 신기술금융회사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22	R&D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첨단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준성특허 법률사무소		BigData 기반 IP-R&D 및 글로벌 사업화 전략 컨설팅이 가능한 컨설팅기관으로 IP-R&D 전문성, DCP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풍부한 경험, Data driven 전략 컨설팅을 강점으로 창업팀의 글로벌 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
23	투자	우리벤처 파트너스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로서 ICT, 바이오&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 우리금융그룹, 해외거점(미국, 싱가포르, 상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
		교보증권		교보생명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종합 증권사로 투자, 기업금융, IPO 및 M&A 매각자문, 경영 컨설팅 등 기업 영속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
23	R&D	인포뱅크		모바일 / 메시징 서비스 및 스마트카SW 전문기업으로, 30년간의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과 2만 5천여 고객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지원과 IP 및 투자, 스케일업을 지원
		티비즈		IP권리화, 액셀러레이터,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연구개발컨설팅전문회사로서 IP를 활용한 사업화 및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을 제공
		킬사글로벌		지속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Global Growth Platform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현지화, 벤처체인의 현지화, 운영의 현지화를 실현
24	투자	컴퍼니케이 파트너스		AUM 1조원의 풍부한 투자재원을 보유한 호기심 많은 VC로서, AI, 로봇,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에 창업초기 단계는 물론 성장단계 전주기에 투자
	R&D	대전테크노파 크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며,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로봇 등 차세대 과학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카이스트청년 창업투자지주		2014년 KAIST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100% 출자한 대학 내 투자회사로서 글로벌 파트너 및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초기투자 및 스타트업 성장지원
		한국원자력 연구원		딥테크 분야 우수 R&D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 연계 지역 특화시설을 통해 창업팀의 스케일업을 지원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문제해결과 첨단산업을 위한 차세대 양자측정표준확립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양자기술 연구에 주력

**별첨1-2****스케일업 팀스 운영사별 신청 · 문의처**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	(투자) 엘앤에스벤처캐피탈	02-501-1249	info@lnsvc.co.kr
	(R&D) 에트리홀딩스	042-860-0685	jhjeon77@etriholdings.com
	(R&D)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R&D) (주)이디리서치	02-3016-5412	jsyong@edresearch.co.kr
2	(투자) 위벤처스	02-565-6671	info@weventures.co.kr
	(R&D)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02-6917-5500	ys1218@tenopa.co.kr
3	(투자) 이노폴리스파트너스	02-541-4858	jipark@innollc.com
	(R&D) 한국자동차연구원	041-424-7016	leehm@katech.re.kr
	(R&D) 한국과학기술지주	042-862-8693	tkpark@ksthouldings.co.kr
4	(투자)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jyh7494@enlightvc.com
	(투자) 인탑스인베스트먼트	02-567-2500	yunhyuk19@intops.co.kr
	(R&D) 인비전아이피컨설팅	070-4070-3365	nicejokers@envisionpat.com
	(R&D)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053-721-7055	kwang7180@dgth.co.kr
5	(투자) 케이그라운드벤처스	02-3443-4579	info@kground.co
	(투자) DSC인베스트먼트	02-3453-3192	seongmin.kang@dscinvestment.com
	(R&D) 기술과가치	02-3479-5004	wychung@technoalue.com
6	(투자) 대덕벤처파트너스	042-485-9684	jhjeong@dvpdvp.com
	(투자) 롯데벤처스	051-747-1530	daewoo.lee@lotte.net
	(R&D) 유에이드	042-476-1645	benny@uaide.kr
7	(투자) 디티앤인베스트먼트	02-6219-4100	syoon@dtni.co.kr
	(R&D) 내비온	02-6407-7766	jw jong@navion.biz
		02-6407-7757	shcho@navion.biz
	(R&D) 디티앤씨	031-326-2664	shin@dtnc.net
8	(투자) 아주IB투자	02-3451-9270	sbhan930@ajuib.co.kr
	(R&D)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7282	path@kist.re.kr
	(R&D) 고려대학교 의료원	02-3407-4001	wooju2014@korea.ac.kr
	(R&D)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4	leebw@kist.re.kr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9	(투자)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02-3448-5650	yhko@hbvc.co.kr
	(투자) 엔브이씨파트너스	051-914-0938	info@nvcp.kr sdlee@nvcp.kr
	(R&D) 전략컨설팅집현	02-6475-5025	yangsun@withwisers.com
10	(투자) 캡스톤파트너스	02-575-1210	biz@cspartners.co.kr
	(R&D)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061-320-9541	dwlee@kentech.ac.kr
	(R&D) 퓨처플레이	02-557-1805	im@futureplay.co
	(R&D) 스파크랩	02-2231-3014	tips@sparklabs.co.kr
	(R&D) 미래과학기술지주	042-349-3111	tips@miraeholding.com
11	(투자) BSK인베스트먼트	02-538-0460	bbsnew@bskinvest.com
	(투자) 동문파트너즈	02-2265-0566	hyung@egpartners.co.kr
	(R&D)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914	sbheo@keti.re.kr
	(R&D) 한국발명진흥회	02-3759-2863	biwaco@kipa.org
	(R&D) 선영파트너스	02-6105-7132	best@sypartners.co.kr
12	(투자) SK증권	02-3773-8534	sch0726@gmail.com
	(투자) 티인베스트먼트	02-568-8581	shbae@tinvestment.co.kr
	(R&D) 연세대학교기술지주	02-2123-5144	worry1004@yonsei.ac.k
	(R&D) NICE평가정보	02-2124-6822	st_service@nice.co.kr
	(R&D) 에이치앤피파트너스	02-571-9977	spkim@hannp.com
13	(투자) 하이투자파트너스	02-761-8600	jyyang@hi-investment.com
	(R&D)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02-6956-8083	pjt0915@twinv.co.kr
	(R&D) (주)유원솔루션	02-571-1616	hwkhang@ipuone.com
14	(투자) 플래티넘기술투자	02-6246-3118	sn@pltic.co.kr
	(투자)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070-7770-9935	jmlee@ubinv.com
	(R&D)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051-717-0417	yjpark@buholdings.co.kr
	(R&D) 특허법인 지원	02-6268-4862	joanna@g1pat.com
	(R&D)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921	csk0804@kimm.re.kr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15	(투자) 데일리파트너스	02-6953-5895	sumin@dayli.partners
	(R&D)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053-790-5732	ahnyoungtae@kmedihub.re.kr
16	(투자) 세마인베스트먼트	02-3484-7072	leecj@semainv.com
	(투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02-554-2222	yelee@mgni.co.kr
	(투자)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070-4468-8761	hs.jung@k2investment.co.kr
17	(R&D) 에스와이피	070-8644-9053	ysh@sypip.com
	(R&D)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031-8039-6738	kbs@gdinfoundation.com
	(투자) 스케일업파트너스	02-551-2090	admin@supartners-cg.com
18	(투자) 엠씨파트너스	02-555-3747	bheum@mcpartners.co.kr
	(R&D) 고려대학교기술지주	02-3290-5894	tigeryun@korea.ac.kr
	(R&D) 애니파이브	02-2082-2600	yilee@anyfive.com
19	(R&D) 이크레더블	02-6309-4690	jykim@credible.co.kr
	(R&D) 제타플랜인베스트	02-561-6698 02-538-4801	bitcamp@daum.net
	(R&D) KIC Washington	+1-571-405-6220	kic@kicdc.org
18	(투자) 원익투자파트너스	02-6446-7170	hyoon@wonik.com
	(투자) 이앤벤처파트너스	02-569-3459	jgjung@envp.co.kr
	(R&D) 월스	042-862-6014	pjn77@wips.co.kr
	(R&D) 한국전기연구원	062-606-7342	jobk21@keri.re.kr
	(R&D) 한양대학교기술지주	02-2220-4072	jhkim511@hyuholdings.com
19	(투자) 유진투자증권	02-368-6173	psh0070@eugenefn.com
	(투자) 안다아시아벤처스	02-569-6705	wy.jang@andaasiavc.com
	(R&D) 특허법인 다나	02-6957-9902	lhoiof7i@danapat.com
	(R&D)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b2k82@ktr.or.kr
	(R&D)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04	kht0423@kitech.re.kr
	(R&D) 키프론바이오	043-210-7799	minyoung.kim@keyfronbio.com
	(R&D) 드림씨아이에스	02-2010-4507	jae-beom.lee@tigermedgrp.com

구분	운영사	대표전화	이메일
20	(투자) 삼성벤처투자	02-2255-0299	Eshinyoung.stan.lee@samsung.com
	(R&D) 다래전략사업화센터	02-3475-7745	ksm@daraebiz.com
	(R&D)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031-290-5083	seung2@skku.edu
	(R&D)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042-865-3516	jhjeong86@kbsi.re.kr
21	(투자) 에코프로파트너스	02-6920-6508	vitamink@ecopro-partners.com
	(투자) 현대차증권	02-3787-2169	KYT1041@hmsec.com
			jw@hmsec.com
			CYKIM@hmsec.com
21	(R&D)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553-3808	yclee@korsca.kr
	(R&D) 한국콤팩스	02-2200-0800	jin@kompass.co.kr
	(R&D) 네모아이씨지	031-781-7060	minkyun@nemoicg.com
22	(투자) 엘에스케이인베스트먼트	02-553-9631	dc@lski.co.kr
	(투자) 엔에이치벤처투자	-	office@nhvic.com
	(R&D)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2-860-4114	syshin@kribb.re.kr
	(R&D) 준성특허법률사무소	02-557-9955	js.lee@joonsungip.com
23	(투자) 우리벤처파트너스	070-4377-2019	eunb@woorivp.com
	(투자) 교보증권	02-3771-9106	kyobovc@iprovest.com
	(R&D) 인포뱅크	031-628-1500	startup@infobank.net
	(R&D) 티비즈	02-6405-3271	tbiz@tbizip.com
	(R&D) 킬사글로벌	-	business@kilsaglobal.com
24	(투자) 컴퍼니케이파트너스	02-568-8512	harry0629@kpartners.co.kr
	(R&D)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891	kyj1984@dntp.or.kr
	(R&D)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02-6494-7773	info@kaist.vc
	(R&D) 한국원자력연구원	042-868-2000	arioh@kaeri.re.kr
	(R&D) 한국표준과학연구원	042-868-5416	jongwon.kim@kriss.re.kr

**별첨2****스케일업 팁스 지원분야(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초격차 10대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국가전략기술 · 탄소중립 분야(13개 분야, 124개 품목)**

분야	순번	품목명
반도체· 디스플레이	1	반도체 첨단패키징 제조·테스트용 소재·부품·장비
	2	첨단 모빌리티용 인지센서
	3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재
	4	AI반도체 설계·최적화 회로 시스템
	5	반도체 첨단패키지 초미세 공정
	6	マイ크로LED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7	차세대 프리폼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8	초미세 반도체 증착·식각 공정
	9	고집적·고성능 메모리 소재·공정·소자
	10	전력반도체 소자
	11	전기차용 전력변환 모듈·파워 IC
	12	극한환경용 저전력·자립형 센서
	13	초소형 MEMS 센서
	14	신축성 디스플레이 패키징 신공정
	15	디스플레이용 친환경·고효율·고색재현 양자점 소재·소자
	16	차세대 OLED 장비·부품
	17	노광공정용 소재·부품·장비
	18	초실감 디스플레이 제조·검사
이차전지	1	재사용 이차전지 제조·운용 시스템
	2	친환경·저비용 이차전지 양극 관련 소재
	3	이차전지용 고용량·고출력 양극 관련 소재
	4	열폭주 및 화재전이 차단시스템
	5	사용 후 배터리 고속·비파괴 모니터링 시스템
	6	배터리 지능형 통합관리 시스템
	7	고에너지밀도·경량화 이차전지 모듈 및 팩 제조시스템
	8	이차전지 친환경 소재 및 전극 생산 공정
	9	폐이차전지 재활용 및 회수 시스템
첨단 모빌리티	1	초고속·고효율 전기차 충전시스템
	2	수소 충전·저장밀도 향상 시스템
	3	고안전·고밀도 전기에너지시스템
	4	AI·SDV 융합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5	연료전지시스템용 내구안전성·효율향상 부품 및 시스템
	6	고성능 전기구동 및 고효율 전력변환 시스템
	7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시스템
	8	UAM 소재·부품 및 양산화 시스템
	9	MaaS연계 자율주행 교통융합 서비스
	10	차세대 UAM 부품 및 시험평가 솔루션

분야	순번	품목명
차세대 원자력	1	고품질·단납기 소형 모듈 원자로 제조 공정
	2	SMR 건설·운영 기술 종합 솔루션
	3	고유안전성 극대화 솔루션
	4	고신뢰도 부지평가 및 고안전·고효율 처분시스템
	5	고준위방폐물 운반·저장 시스템
	6	이동형 원자력 시스템
첨단 바이오	1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생산·분석 플랫폼
	2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3	mRNA 백신 고효율·저비용 생산 플랫폼
	4	바이오·의료 데이터 기반 AI 솔루션 및 플랫폼
	5	차세대 유전자 편집 시스템
	6	유전자 전달용 고효율 소재·전달체
	7	CAR 기반 유전자세포 치료제 및 플랫폼
	8	유전자 합성 및 유전체 제작 플랫폼
	9	초고속 스크리닝·성능평가 시스템
	10	빅데이터 기반 설계 시스템
	11	세포 유래물질 치료제
우주항공·해양	1	전자광학 탑재체
	2	고해상도 심해물리탐사 및 자원량 평가 시스템
	3	SAR 위상배열 안테나
	4	심해 자원 채광 시스템
	5	고압·고출력 터보펌프 시스템
	6	우주물체 감시·추적 통합시스템
	7	항공기용 고성능·장수명 가스터빈엔진 부품·장비
	8	차세대(6세대)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부품
	9	1800K급 항공 터보팬 엔진 핵심 소재·부품·공정
	10	항공용 엔진 서브시스템
수소	1	고성능 수전해 시스템 핵심 소재·부품
	2	수소혼소식 소형 발전시스템
	3	수소연료전지 비상발전시스템
	4	액화수소 저장탱크
	5	대용량·고내구성 수소 저장·운송 핵심 소재·부품
	6	고강도 파이프라인 수소운송시스템
사이버보안	1	AI 특화 사이버보안 솔루션
	2	지능형 보안관제 자동화 시스템
	3	프라이버시 강화 솔루션
	4	SW 공급망 무결성 검증 시스템
	5	웹3.0 기반 탈중앙화 보안 솔루션
	6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7	물리·가상 융합보안 솔루션
	8	랜섬웨어 감염 탐지·차단·복구 솔루션
	9	양자내성 기반 보안 전환 솔루션
	10	통신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	순번	품목명
인공지능	1	자율성장 AI 플랫폼
	2	고성능 멀티모달 솔루션
	3	데이터 및 AI모델 최적화·경량화 솔루션
	4	대규모 분산·병렬 학습지원 서버 시스템
	5	뇌모사 인지 AI 시스템
	6	AI Transformation 적용 시스템
	7	다중 AI 에이전트 협업 시스템
	8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9	클라우드 최적화·관리 AI 플랫폼
	10	데이터 편향성 탐지 및 공정성 검증 시스템
차세대 통신	1	오픈랜 HW 및 시스템
	2	5G·6G 프론트홀·백홀용 전송 부품 및 모듈
	3	통신인프라 저전력화 솔루션
	4	오픈랜 가상화·지능화 소프트웨어
	5	기지국·중계기용 RF·안테나 부품
	6	5G 무선망 커버리지 확장 시스템
	7	초고속 6G 네트워크 시스템
	8	초저지연 네트워크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9	이동통신 단말용 RF·안테나 부품
	10	저궤도 위성통신용 단말
첨단로봇·제조	1	맥락지능 기반 물체 인식·동작 계획 솔루션
	2	소프트웨어 정의형 AI융합 범용 제어기
	3	가상 공장 구축 솔루션
	4	제조공정 디지털 자산 모델 생성 및 데이터 연동 솔루션
	5	인간-로봇 물리적 상호작용 시스템
	6	고부가 구동부품
	7	실내외 비정형 환경 주행기반 로봇 시스템
	8	소셜 상호작용 AI 시스템
	9	로봇 매니퓰레이터 조작·동작 자율 생성 시스템
양자	1	양자키분배 및 양자암호통신 부품·장비
	2	양자 자기장·전기장 센서
	3	양자 네트워크용 부품
	4	양자 원자시계 구동용 장치·부품
	5	양자 광기반 센싱 부품·모듈
	6	양자컴퓨터용 부품·장비
탄소중립	1	중소형 CO <sub>2</sub> 포집시스템
	2	CO <sub>2</sub> 화학 전환 시스템
	3	CO <sub>2</sub> 광물 탄산화 시스템
	4	CCU 활용 친환경 SAF 제조 시스템
	5	DAC 연료생산공정 최적화 시스템
	6	분산전원 연계 태양광 운영 시스템
	7	고효율 태양광 모듈 및 장치
	8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9	고효율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

### 별첨3

### R&D 신청 · 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고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③ 기(既) 개발/기(既)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직인 및 사업자등록증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⑦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⑧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⑨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⑩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⑪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http://www.ccrs.or.kr), ☎1600-5500)
-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http://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④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  
 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  
 (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관련 문의처 >**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② R&D 졸업제 : 최대 5회까지만(단, 최근 7년간 3회까지(최근 7년의 시작연도는 '2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5회 이상(단, 최근 7년 간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수행 횟수는 '20년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을 한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과제를 기준으로 산정 함
  
- ③ 과제 수행 횟수 산정 시 '20년부터 '23년까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우만 산정하고, '24년부터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산정 대상으로 함(단,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함)
 

\* '20년부터 '23년까지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팀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 부자재) 과제 등 공고 당시 졸업제 예외로 명시한 과제는 산정 과제 수에서 제외
  
- ④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24년부터 협약하여 수행하는 과제는 졸업제 과제 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용을 달리 함
  -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과제 및 스케일업 팀스 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TIPS 과제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과제,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계별로 연계 지원한 2개의 과제는 그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세부과제 또는 단계별 연계 지원을 통해 수행한 과제 수가 1개인 경우에도 1개로 산정)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경쟁형 과제, 산학연 Collabo R&D 과제 및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과제 등 단계형 지원 과제(1단계 → 2단계)를 2단계 까지 수행한 경우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산정 함(단, 1단계 과제 수행 중에는 과제 수행 횟수를 1개로 계상하고, 2단계 과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평가 탈락이 확정된 경우 1단계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졸업제 사업 수행 횟수별 단계형 사업 신청 및 수행 가능 여부 >

졸업제 과제 수행 횟수(최근 7년)	단계형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	1단계 과제 수행 중 다른 졸업제 사업	2단계 탈락시 다른 졸업제 사업
3회	신청 불가	신청 불가	신청 불가
2회	신청 가능	신청 불가	1개 가능
1회	신청 가능	1개 가능	2개 가능

- '19년, '20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정기간 중에 있는 기업(강소기업에서 졸업 및 지정취소된 기업은 제외)이 수행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는 졸업제 대상 과제로 계상하지 않음

- ⑤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한다.(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대상은 '25년부터 협약하는 과제들로 하며,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정공모과제 단위로 수행하는 2개의 세부과제와 산학연 Collabo R&D사업의 컨소시엄형 과제에서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2개의 세부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를 1개로 산정

< 표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

'25년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예외 사업
0개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수행 불가	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⑥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 ⑦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 3) 연구시설 · 장비 구축 · 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 (1) 연구시설 · 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 · 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연구시설 · 장비 운영 · 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 비용	과제 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 <sup>1</sup>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 · 활용하는 연구시설 · 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 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 청년인력 의무채용

☞ '24년 「청년고용 친화형 R&D 패키지」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

###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 과제 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기업 지원금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 해야 함

\* 예시)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 A가 7억원,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를 유지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신규채용 시점)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정규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② 청년인력 채용 실적점검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위반 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계상금액 전액(既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함
-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5억원 이상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기 준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IRIS 또는 SMTECH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에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구분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이하 생략>...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별첨6]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보안등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별첨6]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별첨4****지분투자 선정배제 및 취소기준**

① [선정배제 기준] 지분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D매칭펀드 지분투자 승인을 배제

항 목		세 부 내 용
매 칭 투 자  신 청 기 업	증자	1. 지분투자 신청 내역과 증자 내역의 중요한 내용(의사록, 계약서 등의 투자단가, 총 투자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
	소송 및 계약위반	2. 지분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3. 후속 지분투자 신청의 경우 1차 지분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 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투자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기업 투명성	4. 지분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주주·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5. 지분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 또는 주주, 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6. 기관투자자, 지분투자 신청기업, 조합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 7. 기타 매칭 투자 신청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는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부 R&D등 지원 자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대상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9. 지분투자 심사 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10.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지분투자 신청기업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자	1. 지분투자 신청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현물출자, 채권의 출자 전환 등)
	소송 및 계약위반	2.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등 한국벤처투자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지분투자 신청 기관투자자가 조합의 공동매도권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후속 지분투자 신청의 경우 1차 지분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주주간 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펀드운용 방해 및 부정행위	5. 기관투자자가 부당한 거래요구, 금전 또는 물품 요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기관투자자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R&D매칭펀드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과 특수관계	7.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경우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다만, 기관투자자가 무보수 사외이사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가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기관투자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후속투자	9.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기 투자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시, 투자기업이 R&D매칭펀드 기 투자 금액의 70% 이상을 R&D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타	10.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운영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된 제재(매칭제한)를 받고 해당 제재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11.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 기관투자자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선정취소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지분투자 최종 승인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청산, 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상 법령 위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종 선정 후 3개월간 투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 지분투자 최종 승인기업이 지분투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지분투자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제재사항] 지분투자 최종 승인 후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80일간 R&D매칭펀드 지분투자 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 ·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 · 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 · 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 대책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 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 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I 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 ·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II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III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 · 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 ·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협동으로 실시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 한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 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대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관련)

#### 1. 보안관리 체계

-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 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 ·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 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 마.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 조치 절차
  -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 · 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 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 4. 연구시설 관리

-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용
-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 5. 정보통신망 관리

-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 장비의 설치·운영
  -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 (인)

20 . . .

○○○ 귀하

## 별첨6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형 신청 증빙 서류

### □ 신청자격 세부조건별 추가 제출서류

- 해외VC로부터 100만 불 이상 투자 유치

구분	구분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투자	필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포함)	국내 법인의 지분구조 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필수	주주명부 및 지분율 서식	별첨양식 제출
	필수	해외VC 투자계약서· 해외 투자금 납입내역 사본	해외투자유치 계약서, 납입증명서, 외화송환증명서 등 제출
	선택	해외VC 투자연혁 또는 이력, 해외펀드 운용실적 등	해외VC 투자 포트폴리오, 과거 투자이력 내용, 해외VC 요건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최근 3년간 누적 해외 매출액이 50만 달러 이상

구분	연번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매출액 (서류 중 택)	선택	'22~'24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제출
	선택	'22~'24년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선택	'22~'24년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KTNET 발급본 제출
	선택	'22~'24년 외국인도수출 실적증빙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선택	'22~'24년 수출실적증명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제출

-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을 갖춘 기업

구분	구분	서식명	세부내용
해외 법인 설립	필수	해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현지 사업자등록증 포함)	해외 법인의 등기사항 및 사업자 등록 현황 확인을 위한 각 국가별 발급본 제출
	필수	주주명부 및 지분율 서식	별첨양식 제출
	선택	현지 인력 채용, 현지 사업장 기반	현지 인력 고용계약서, 급여이체내역, 현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서 등 제출
	선택	기타 현지활동 입증 서류	해외 고객사와 체결한 계약서, MOU, 구매의향서, 현지 세금 납부 증빙서류 등 제출

### [해외 VC투자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해외VC투자 금액 산정** : 해외VC 투자금액의 총 합산액(국내VC의 투자는 미인정)으로 신규 투자 또는 신규 및 기존지분 인수 등 혼합투자 모두 인정하여 신청 가능  
※ Co-GP의 경우, GP의 구성이 국내 VC로만 이루어진 경우 인정 불가
- **해외VC 요건**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국외'로, 해외펀드 운용 실적, 전문인력(벤처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 관련 전문가) 보유 등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요건검토 시 적정 여부 판단 예정

#### < 해외VC 인정 기준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NVCA, EVCA, SVCA, JVCA 등)
- 해외VC 글로벌 펀드 출자사업 최종 선정 운용사(KVIC 홈페이지 확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
-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 [해외매출(수출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 간접수출액도 직접수출액과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받아 초보~강소 단계로 지원가능하며, 기업 희망시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단계로도 신청 가능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상품(재화) 수출실적은 운영기관에서 조회예정으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그 외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간접수출실적, 서비스수출실적, 외국인도수출실적 등은 증빙서류 제출시에만 합산

※ 지점·지사 수출실적 증명원 제출 시 실적 합산 가능(동일 법인이 아닌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

### [해외 사무소 및 법인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 **해외 사무소 및 법인 보유기업** : 국내 법인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법인을 신설하여, 현지 기반 실질적 현지활동과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활동 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 예정 기업의 경우 인정 불가하며, 실질적인 운영 실체 입증
- **현지기반 증빙서류** : 현지 인력 고용과 관련한 증빙(고용계약서, 급여이체내역), 현지 사업장 기반 증빙, 기타 현지활동 입증 가능한 자료 등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요건검토 시 적정 여부 판단 예정

※ 해외 소재지에 모회사를 두고 국내 자회사 설립 후 신청하는 경우는 본 사업의 취지에 미부합하여 해당 지원대상 제외